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혁진의원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92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 요건 완화(최혁진·복기왕 의원안)	2

I. 개요

1. 최혁진·복기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92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혁진·복기왕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1. 8.
- (3) 회 부 일 : 2026. 1. 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 요건 완화(최혁진·복기왕 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7조)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신 설> ○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 요건 완화 ○ (현행과 같음)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u>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등 2. 거래상대방의 파산,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 3.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 4.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현행	개정안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외상 매출금등의 경우부터 적용

* 최혁진·복기왕의원안 2026. 1. 8. 제출(의안번호 15926)

□ 개정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임.

□ 현행법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¹⁾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판매 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임업의 경비

가.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나. 식립비

다. 관리비

라. 벌채비

마. 설비비

바. 개량비

사. 임목의 매도경비

4. 양잠업의 경비

가. 매입비

나. 사양비

다. 관리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5. 가축 및 가금비

가. 종란비

나. 출산비

다. 사양비

라. 설비비

마. 개량비

바. 매도경비

6. 종업원의 급여

6의2. 종업원의 출산 또는 양육 지원을 위해 해당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6의3. 법 제20조제1항제6호 및 이 영 제3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희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7의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세제공과금(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나. 해당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다.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해당 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10의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10의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4.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1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가 같은 법에 따라 피보험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문화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2.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등으로 규정하면서, 대손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인용하고 있음²⁾.

□ 개정안은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대손금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완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금의 일부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면서,

-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종업원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금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현행 시행령에서 ①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외) 및 ②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외상매출금등’을 대손금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과 개정안 간 대손금 범위 비교]

현행(「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5호)	(현행과 같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	<u>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u>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1호)	
(그 외 생략)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

□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외상매출금이나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조기대손처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매출 감소, 매입비 부담에 이어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이 세 번째 순위를 기록³⁾한 만큼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조기대손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필요경비의 요건을 완화하는 경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조기대손처리가 가능해질 경우 신용거래가 보다 활성화되어 매출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인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을 것’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그 회수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자영업자 25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 한국경제인협회, 2025.7.

둘째, 회수기일에 대한 요건을 2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손금 체계와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회수기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대손금 요건 2년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나치게 길어 그동안 대손처리를 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1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세법 시행령」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7